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2022. 08.

국 토 교 통 부
(항공기술과)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위임범위에 맞게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항공안전법 제27조의 위임범위에 맞게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변경(안 제13조)
- 나. 기술표준품의 고장, 기능장애 및 결함보고 사항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3항과 동일하게 반영(안 제21조)
- 다. 항공안전법 제27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하위 고시에서 정한 소유권의 변경, 양도 금지 등을 삭제(안 제22조, 안 제26조)
- 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취소 규정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4항과 동일하게 반영(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제3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를“(형식승인 소지자의 준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사항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작하여야 한다”를 “제작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준수하여야 한다”를 “준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유지하여야 한다”를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를 “식별표시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할 것”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을 “형식승인 소지자는 항공안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13조(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u>의무를 준수하여야</u> 한다.</p> <p>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일자 에 유효한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당해 기술표준품을 <u>제작하여야</u> 한다.</p> <p>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 및 본 고시의 제20조의 규정을 <u>준수하여야</u> 한다.</p> <p>3.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u>유지하여야</u> 한다. <u>품질관리체계는 당해 기술표준품이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u> 한다.</p> <p>4.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모든 기술자</p>	<p>제13조(형식승인 소지자의 <u>준수사항</u>) ----- ----- <u>사항을 확인해야</u> ----- -----.</p> <p>1. ----- ----- ----- ----- <u>제작할 것</u></p> <p>2. ----- ----- ----- <u>준수할 것</u></p> <p>3. ----- ----- ----- <u>유지할 것 <후단 삭제></u></p> <p>4. ----- -----</p>

료 및 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할 것

5.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식별표시를 하
야 한다.

5. -----

----- 식별표시할
것

6.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

----- 제출할 것

7.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고장·
기능장애·결함 발생 내용을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8. 소지자의 회사명, 주소, 소유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의 규
정에 따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9. 당해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을
이전·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9. -----

----- 보고
할 것

제21조(고장, 기능장애 및 결함 보
고) ①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
외하고,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3항
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표준품

제21조(고장, 기능장애 및 결함 보
고) ① 형식승인 소지자는 항공안
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4조에 따라 -----

(부품 및 공정 포함)의 모든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 소지자는 품질관리체
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항 각호
에 해당하는 기술표준품의 모든
결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스템 또는 장비의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에 의한 화재
2. 엔진, 주위의 항공기 구조, 장비
또는 구성품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엔진 배출장치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
3. 승무원실 또는 객실 내로 독성
가스 또는 유해한 가스의 축적
또는 유입
4. 프로펠러 제어시스템의 기능불량,
고장 또는 결함
5. 프로펠러 또는 회전익항공기 허
브 또는 블레이드 구조의 파손
6. 점화원이 상존하는 지역에서의
가연성 유체의 누출

<삭 제>

<삭 제>

7. 작동 중에 구조 또는 자재 파손에 의해 발생한 브레이크 시스템의 고장

8. 모든 내인적인 조건(피로, 강도 저하, 부식 등)에 의해 발생한 항공기의 주 구조물 중대 결함 또는 파손

9. 구조 또는 시스템 기능불량, 결함 또는 고장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정상 진동 또는 이상 진동

10. 엔진 고장

11. 비행 특성을 저해하는 항공기의 정상적인 조종에 간섭을 유발하는 구조 또는 비행 조종 장치의 기능불량, 결함 또는 고장

12. 항공기의 특정 작동 중에 하나 이상의 전원 시스템 또는 유압 시스템의 완전한 고장

13. 항공기의 특정 작동 중에 하나 이상의 비행자세, 비행속도, 비행 고도 계기의 고장 또는 기능불량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적절한 정비 또는 사용에 의

<삭 제>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2.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경우

3. 법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규칙 제134조,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고한 경우

⑤ 형식승인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 보고시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1. 보고가 필요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된 후, 24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휴일 또는 공휴일이 보고 기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보고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방법 또는 양식을 사용하여 가능한 신속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가능한 다음 각목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술표준품과 관련된 항공기,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일련번호

나.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기술표준품의 일련번
호와 모델, 명칭

다.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의
형태

⑥ 형식승인 소지자는 당해 기술
표준품의 고장, 기능장애, 결함 또
는 품질관리체계의 결함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
우, 보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결
과 및 시정조치 내용 또는 시정
조치 계획, 그리고 해당될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에 필요
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상태와 사안에 따라 필
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토교통
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형식
승인 소지자는 기술표준품 표준
서에 대한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3. 형식승인 소지자는 기술표준품
에 대해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⑦ 형식승인 소지자는 불안전하거나 부적합한 기술표준품이 배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회사명, 주소 또는 소유권의 변경) ① 형식승인 소지자는 회사명, 주소 또는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② 형식승인 소지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재발행되기 전에는 신규시설에서 새로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출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형식 승인서의 취소)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하는 기술표준품이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삭 제>

제26조(양도금지) ① 규칙 제58조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삭 제>

② 형식승인 소지자는 형식승인에
대한 설계 권리 및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